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6일, 김병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7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방위원회(2026.4.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병주의원)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등 군수품 구매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이 방산업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현행 제도에서는 방산업체가 구매시험평가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 비용을 보상받을 근거 규정이 없어, 그 비용을 방산업체가 부담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원하는 방산업체는 재무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임.

○ 또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방위산업 육성사업)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 절차에 투입된 비용(제안서 작성비용, 선정절차 참여비용 등) 보상 규정이 없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육성사업 등의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여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이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